

다문화 친구 쌍방 폭행... 학폭 징계 중 고생들 행정소송 패소

“징계 기준 따른 학폭위 심의·의결 존중” “피해 학생 고통과 보호할 필요성 고려”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중고등학생들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냈으나 연이어 패소했다.

법원은 교육 전문가인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의결 결과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고, 피해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징계 전반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군(법정 대리인 부모, 이하 같음)이 전남도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사회봉사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군은 친구 3명과 함께 지난해 3월 30일 고등학교 3층 사위실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

에게 “진짜 흑인이네”라며 조롱하는 언어폭력을 했다.

피해 학생에게 찬물을 뿌리고 오줌을 누기도 했다. 피해 학생의 중요 부위를 만지는 성범죄도 저질렀다.

A군은 친구 3명과 함께 특수강제추행·공동폭행 등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또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20일, 특별교육 10시간 등의 학폭위 징계 처분을 받았다.

A군은 장난으로 찬물을 뿌리고 조롱한 사실만 있어 징계가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등교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심각성·지속성·고의

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화재 정도 등을 종합해 적법한 징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A군이 학폭위에 출석해 의견을 충분히 진술했던 점, 추행 행위를 동조·방관한 것도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점, 학교폭력 행위가 15분가량 지속됐는데 말리지 않고 사위기로 찬물을 뿌린 점, 관련 행사사건에서도 가해 학생들과 합동해 추행·폭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 점, 피해 학생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서다.

재판부는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 목적에서 취한 조치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항이 기재됨으로써 A군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을 고려해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B군이 전남도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피해 학

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B군은 2021년 3월 중학교에서 친구와 싸우는 과정에 친구 엉덩이를 발로 차고, 목 주변을 눌렀다. 자기 다리를 볼펜으로 찌른 친구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B군은 당시 보호자와 교사 면담을 거쳐 학교폭력으로 접수하지 않고 자체 종결기로 했다가 지난해 5월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이후 B군과 친구 모두 서로에 대한 학교폭력이 인정돼 특별교육 4시간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받았다.

B군은 쌍방 폭행 과정의 자구 행위였으며 징계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과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 적법하게 징계가 내려졌다고 봤다.

같은 재판부는 C군이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

생 처분(사회봉사)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C군은 지난해 10월 18일 중학교 같은 반 학생과 체스 게임을 하던 중 시비가 붙었다. C군은 당시 피해 학생의 얼굴·몸을 때려 다치게 했고, 학폭위에서 사회봉사 3시간 징계 처분을 받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군은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피해 학생이 안와 내벽 골절 등 전치 3~4주의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C군에게 미필적인 폭행·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또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등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의 공익적 필요가 C군이 받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경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오유나 기자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범국민대회, 도심 행진

16일 서울 용산구 남영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범국민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서울역으로 행진하고 있다.

“노조법 2조 개정해야” 71.9% “尹, 노동자에 가혹” 59.6%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원청에게도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에서 개정 노조법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응답도 절반에 육박했다.

17일 직장감질119 등이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응답자의 71.9% ‘동의한다’(동의하는 편 53.8%, 매우 동의 18.1%)고 답했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넓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직장감질119 측은 “지금까지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 사업주 대신, 결정권이 없는 하청업체 사업주에게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안전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4%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20.6%)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노사관계 대응에 대해선 ‘사용자에 관대하고 노동자에 가혹하다’는 응답이 59.6%인 반면, ‘사용자에 가혹하고 노동자에

관대하다’는 응답은 10.6%에 그쳤다. 또 10명 중 8명(79.0%)은 ‘현 정부가 직장인들을 위한 노동·일자리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노사관계 대응과 노동·일자리 정책에 불만을 표한 응답은 성별, 고용형태, 직업을 막론하고 모두 높게 나타났다. 직장감질119는 지적했다. 아울러 직장감질119에는 올해 8월까지 들어온 이메일 제보 1268건 중 ‘원청감질’ 관련이 42건(3.3%)로 나타났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한 제보자는 직장감질119에 “청소원 한 명이 병가를 쓰자 관리소장이 그 기간 동안 경비원들에게 청소를 대신 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비, 청소, 관리 파트가 모두 다른 회사 소속이라, 문제제기를 하자 관리소장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속한 용역회사에 연락해 해고를 요구했다”라며 “회사 부사장이 ‘억울하더라도 우리는 소장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사표를 종용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직장감질119는 “원청 사용자들은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사용자 지위는 마음껏 누리면서도 책임과 의무는 방기하고 있다”며 “노조법 2조 개정안은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원청을 대상으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라며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뉴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